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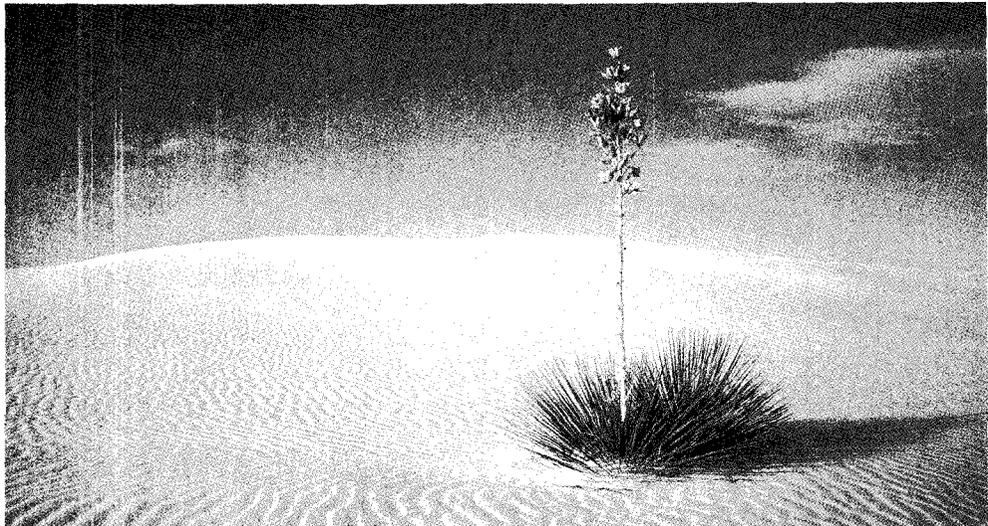
2009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 어떻게 하나?

사후관리 강화 · 세부검토기준 확립 · 지원사업 개선돼야

현재 목록공시 품목은 토양개량 · 작물생육용 485종 및 병해충관리용 164종 등 총 649종이다. 그러나 법률규정 및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천연물질 등에 대한 분석이 어려워 품질관리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관련업계 및 유관기관, 농업인 단체 등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 광 하
농촌진흥청 농자재관리과장



언제부터인가 농사를 지을 때 사용되는 농자재를 말할 때면 친환경유기농자재가 주요 농자재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전까지 주로 비료와 농약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셈이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비료와 농약은 비료관리법과 농약관리법에 의해 각각 등록 및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자재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자재 종류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재는 이 법을 근거로 하여 토양개량과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및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유기축산을 생산하는데 사용이 가능한 사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친환경농자재는 품질관리를 위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 생산하는 업체와 농업인이 서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논의되어 2007년부터 목록공시제도를 도입, 시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목록공시제의 경우 친환경농자재에 대한 품질관리 보다는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농업인에게 알려주는 정도의 수준에 그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친환경농자재의 품질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

추진사항 및 결과

2009년 1월 15일 현재 친환경유기농자재의 목록공시 품목은 모두 649종이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개량·작물생육용 자재가 485종, 병해충관리용 자재가 164종이다.

표 1. 친환경 유기농자재 분야별 목록공시 현황

분 야	구 분	목록공시 제품수
토양개량· 작물생육	- 토양개량	20
	- 작물생육	212
	- 토양개량·작물생육	253
	소 계	485
병해충 관리	- 병해관리	78
	- 총해관리	79
	- 병해·총해 관리	5
	소 계	162
기 타		2
합 계		649

* 농촌진흥청 자료(www.rda.go.kr, 2009. 1. 16 현재)

농촌진흥청에서는 고시 제2009-8호(2009. 1.12)를 통하여 목록공시를 위한 자료를 검토할 때 신청자들의 궁금사항인 목록공시 과정에서 전문위원회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검토하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기준 및 품질기준」을 개정하여 고시하였다. 이 고시 내용 중에는 수입완제품의 경우 외국의 친환경유기농자재로 등록(공시)된 제품, 토양개량제 등 비료로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는 자재의 경우 비료관리법에 의해 생산(수입)업 등록(신고)이 된 것 등 세부 검토항목을 추가하였다.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 문제점

친환경유기농자재의 품질관리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첫째, 친환경농자재 관리를 위한 법률적인 근거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친환경농산물의 분류)

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무농약농산물(축산물의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저농약농산물로 분류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유기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이하 "친환경유기농자재"라 한다.)의 기준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유기농자재 생산업체나 농업인이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목록공시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난 2007년 3월 27일 도입한 제도이다.

그러나 공시제도는 사용가능한 자재인지 여부를 공시할 뿐으로 공시된 제품이 규정에 맞게 생산된 제품인지, 공시 당시의 제출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관리·유통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관리할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제도 또는 인증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 목록공시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이다. 농업인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을 위하여 목록공시를 신청한 제품의 품질이 공시 이후에도 유

지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가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법률적인 규정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사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제품의 품질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법률적인 규정이 없어 형사처벌은 어렵지만, 공시목록에서 삭제한다든지, 공시목록에서 삭제된 사실을 널리 알려 농업인들이 선택하는데 참고로 하게 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하여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친환경유기농자재로 공시된 제품이라도 비료 또는 농약관리법으로 규정된 제품은 각각의 법률에서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가 가능하지만, 농약과 비료관리법에서 규정되지 않은 천연물질 혹은 천연물질 혼합제품은 분석하기도 어렵다는 점이다. 즉, 퇴비, 석회석비료, 규산질비료, 유기질비료, 미생물 제제 등 비료나 농약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제품은 해당 법에 의하여 품질 확인이 가능하나, 천연물로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효과분석을 할 수 없어 품질관리가 어려운 점이 있다.

유관기관 및 업계 등 지혜 필요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지금까지 공시된 649종 제품 중 일부 제품에 대하여 신청당시의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되고 있는지를

2009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 어떻게 하나?

확인하는 것이다. 제품의 생산 현장 뿐 아니라 유통 중인 제품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여 기준에 부적합 제품은 공시목록에서 삭제하고 이를 널리 알려 농업인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목록공시 세부 검토기준을 확립할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전문위원회의 검토기준이 제도적으로 명확하게 고시되지 않았으나, 금년 1월 12일자로 검토기준을 고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검토기준은 더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천적 또는 생물농약자재에 대한 검토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방안과 천연물 자재에 대한 검토기준의 세분화, 외국에서 수입하는 친환경유기농자재에 대한 관리방안 등이다. 코덱스 유기식품가이드라인에서도 규정하였다시피 유기농업의 기본원칙은 지역 내에서 생산된 유기농자재를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가축분뇨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친환경유기농자재로 판매하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 이대로 유통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다른 규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하여 관계기관 및 친환경농업 단체들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제도적인 보완으로 친환경농업육성법의 개정을 통한 친환경유기농자재 관리에 대한 법률적인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일이다.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에 의한 친환경농산물의 분류에서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의 구분을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현행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를 보면 친환경농자재의 사용기준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광의의 친환경농자재와 친환경유기농자재를 구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거나, 제품에서도 구분하여 표시하지 않아 농업인들이 피해발생이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친환경농자재의 공급과 관련한 지원사업의 개선이다. 친환경농업육성이라는 제도적인 면에서 볼 때 유기농산물과 타 친환경농산물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은 유기농산물을 재배하는데 사용가능한 자재에 대하여만 목록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목록공시된 친환경유기농자재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다.

친환경농자재 보조금 지원사업은 유기농산물 생산 이외에도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자재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에게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이제 걸음마를 시작하는 친환경농자재 관련 산업의 발전을 가져오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는 물론 유관기관, 농업인단체 등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Y